

# 고성군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552
----------	-----

제출년월일 : 1999. 7. 9.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 1. 제안사유

- '97. 7. 1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 미성년자보호법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이 시행되었으나 '99. 7. 1 청소년보호법 개정 시행과 동시에 동 법이 폐지되므로,
-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가. 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기준 및 대상(안 제2조)
- 나.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안 제3조)
- 다.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절차(안 제4조 및 제5조)
- 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방법(안 제6조)
- 마.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안 제7조)
- 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 협조체계 구축(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개정 청소년보호법
- 나. 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에관한조례 제정 표준안

## 4. 입법예고

- 가. 기 간 : '99.5 26~6.15
- 나. 장 소 : 고성군계시관,군공보(공고 제99-89호)

## 5. 본문: 덧붙임과 같음

## 고성군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유타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주민 500명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군수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정절차)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 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사회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1998. 8.24 조례 제1563호)는 이를 폐지한다.